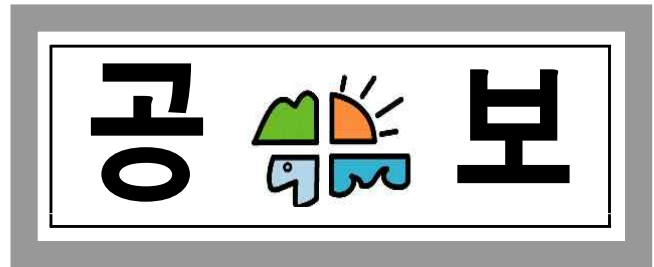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92호 2016년 5월 13일(금)

고 시

-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2

조 례

-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8
-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 속초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54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쉽으로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구성한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을 같은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속 초 시 장

붙 임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1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강원도 동해안권에 위치한 6개시·군(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생발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 명칭은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 사무실은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 두고 향후 공동시설이 있을 경우 이 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협의회는 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지자체의 장으로 하고, 회장은 지자체의 장이 순번으로 역임하되, 순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2.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지역 연계발전
3.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4.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
5. 그 밖에 상호협력이 필요하거나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7조(협의 방법)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로 하며,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협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⑤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 협의안에 따라 관계 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협의회 개최 이전에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을 구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회의원, 주민대표 등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경비 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용역 등 특별 사업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규약 개정)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사항의 성실히행의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목적 및 취지를 반영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 2014. 9. 23자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희망 일자리추진과”를 “경제진흥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속초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개정

나.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1조)

다. 제2조제2호나목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단서 신설(안 제2조제2호나목)

- 라. 제3조(시장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소비자 보호법”을 “소비자 기본법”으로 “제3조”를 “제4조”로 각각 하고(안 제3조)
- “소비자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개정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신설(안 제3조제4호 신설)
- 마. “소비자단체”를 “법 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하며,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바.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물가안정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를 “물가안정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으로 개정(안 제27조제3항)
- 사. “희망일자리추진과”를 “경제진흥과”로 변경(안 제32조제2항)
- 아. “제34조(수당)”을 “제34조(수당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로 개정(안 제34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경제노동담당

(전화: 033-639-2252, FAX: 033-639-246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제3호 중 “옹호 내지 증진하기”를 “증진하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규정한”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소비자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보호를”을 “소비자 권익증진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비자단체”를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 시험·검사나 제22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비자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중 “소비자보호”를 각각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제5호 중 “부의 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물가안정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를 “물가안정관련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희망일자리추진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제34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u>	<u>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

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생략)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3.
-
- 증진하기
-
- .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

-.

1. 소비자 권익증진
-
2. 소비자 권익증진을
-
3. (현행과 같음)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위해방지)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장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수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결합상품등의 제공방지) ①

제4조(위해방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범위에서 -----
-----.

② -----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

제11조(결합상품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이하 "결함상품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 ① (생략)

②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시정, 해약등의 적절한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

----- 법 제8조제1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제16조(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진술의 기회)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소비자단체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처리에 따른 알선·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5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제23조(의견진술의 기회) ----- 제4조에 따른 시험·검사나 제22조에 따른 -----
-- 해당 -----
-----.

제24조(권고 및 공표) ① -----
----- 제17조에 따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소비자 권익증진 -----

-----.

제26조(기능) -----
-----.

1. 소비자 권익증진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속초시가 결정·관여하는 공
공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
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

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
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희망
일자리추진과장, 보건소장, 여성
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관련기관 단
체의 관계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④ (생 략)

제32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희망일자리추진과의 소
비자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2. 소비자 권익증진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5. 그 밖에

----- 회의에 부치

는 --

제2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제진
흥과장-----

-----, 물가안정관련기관 단

체의 관계관 중에서 특정성이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제진흥과-----

-----.

한다.

제3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
----- 「속
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관 계 법 령 발 취

□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조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가. 신·재생에너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시에 맞는 에너지원을 적극 보급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 자리매김

나.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개정 시행으로 지원근거가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바, 이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경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 · 단체의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033-639-2374(FAX 033-639-2465)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경제진흥과(033-639-2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기준 부담률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①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의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추가 지원 사업
2. 속초시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 건물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3. 경로당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제4조(지원절차 등)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규 수혜업체를 확대함으로서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최종 이차보전금”을 “이차보전금”으로, “1년”을 “2년”으로 각각 개정 함.

(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신설 함. (안 제7조제1항 단서신설)

다. 별표에 지원대상기업란 제4호에 “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을 신설 함.(안 별표 지원대상기업 제4호 신설)

라.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 함.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경제노정담당

(전화: 033-639-2252, FAX: 033-639-246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속초시”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속초시”를 각각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속초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호중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속초시”를 “시”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을 “지원”으로, “최종 이차보전금”을 “이차보전금”으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에 제목 “(자금의 상환등)”을 “(자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사업”을 “해당사업”으로,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변경하였을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한다.

별표에 지원대상기업란에 “제4호에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를 신설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제3조관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기업	1. 우선 지원대상(제조업중) 가. 수출상품 생산업체 나.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2. 특별 지원대상 가. 설악산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3. 기타 지원대상 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
용 도	시설 및 운전자금
용 자 한 도	1. 우선 지원대상(제조업) : 3억원 이내 가.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 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 이내 추가 가능 2. 특별 지원대상 : 5억원 이내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가. 기존 은행융자액 범위 안(금융기관 부채현황서 등 참조) 나. 신규 은행융자액 범위 안(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 3. 기타 지원대상(비제조업) : 7천만원 이내 가.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 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이내 추가 가능
지 원 조 건	1. 금리 :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 이내를 이차보전 2. 이차보전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간 (단, 특별 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 기간연장 : 1년만 연장가능 (단, 특별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신청서

1. 상호명 : **【☎(사무실) :** **】**
2. 소재지 : **(휴대폰 :** **)**
3. 대표자 :
4. 사업자등록번호 :
5. 법인등록번호(법인일 경우 기재) :
6. 업체현황

업 태		업 종	
취급품 (생산품)	주요품목 : 매출액 :	종사자	생산직 : 명(남 여) 사무직 : 명(남 여) 계 : 명(남 여)
자 본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계 :	수 출	년 : 천\$ 년 : 천\$

7. 용자 신청액 : 금 원(₩)
8. 용자희망은행 :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위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① 사업계획서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용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제출)
- ③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서(증명서) 1부.
- ④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01

신 청 인 : (인)

속초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u>속초시</u> 에 소재하고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 ----- <u>속초시(이하</u> <u>“시”라 한다)</u> -- <u>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u>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나. ----- <u>제3조</u> <u>제1호부터 제3호까지</u>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이 <u>속초시</u> 와의 협정에 의하여 <u>속초시</u> 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기존 대출융자금 포함)을 말한다.	2. ----- ----- ----- ----- <u>시</u> ----- <u>시</u> ----- -----.
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2호에 의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u>속초시</u> 에서	3. ----- <u>따라</u> -----

일부 또는 전부를 시비(외부지
원금 포함)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자금지원추천신청 및 추천)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
체는 다음 각 호중 해당하는 서류
를 갖추어 시장에게 자금지원 추
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타 필요한 서류(유망중소기
업 선정서, 수출실적증명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
금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심사
한 후 속초시와 협정된 시중은행
에 지원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금
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지원 추천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자금지원 추천대상에서 제
외한다.<일부개정 2012.6.8>

1. ~ 4. (생 략)

5.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
원 받은 업체중 최종 이차보전
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

----- 시

-----.

제4조(자금지원추천신청 및 추천)

① -----

---- 각 호의 -----

-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다)-----.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② ----- 제1항-----

----- 경우에는 -

----- 시-----

-----.

제5조(자금지원 추천제외)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지원

----- 이차

보전금 ----- 2

과하지 않은 업체

6.·7. (생략)

② (생략)

제7조(자금의 상환등) ① 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중은행에서는 매월말 현재 상환기간 연장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상환기간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⑤ (생략)

제9조(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년-----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금의 상환 등) ① -----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

----- 다음 달
-----.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자금의 환수조치 등)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
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
거나 감독상의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4.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업종
을 변경하였을 때. 다만, 동일
인이 업종변경 후 관련 증빙서
류를 신고시 유효한 것으로 한
다.

-----.

1. (현행과 같음)

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
능한 경우

3.

경우

4.

----- 변경한 경우.

-----.

관 계 법 령 발 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 2016.7.28.] 제2조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 2016.7.28.] 제10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완화(정부정책)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일부개정(안 제7조제1항)
 - 제안서 제출시 토지소유권(동의 포함) 첨부자료 제출 삭제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 삭제(안 제25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 및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6호, 제18호)
 - 방안 수립 시 생산관리·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20% → 30%

-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의2)
 - 건폐율 완화 20% → 40% (2016.12.31.한)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안 제57조의2)
 -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일반주거지역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3제14호, 별표4제13호, 별표5제13호)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바닥면적 1,000㎡미만의 공장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별표3 제13호,14호의 공장
- 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 완화(안 별표15제12호, 별표16제14호, 별표22제14호)
 - 식품공장의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단서규정 삭제

다.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

- 법령개정으로 조항변경(안 제51조 및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 제54조)
 - 미비점 개선
 - 향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46조제11호)
- ⇒ 어구보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 허용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 연락처 : 전화(033-639-2447), 팩스(033-639-2485), 이메일(gcgin@korea.kr)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을 “영 제31조제2항제6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6호 중 “이하”를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이하”를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

제4호”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여,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4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댓값
- ②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시설
 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60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별표 3 제14호부터 19호까지를 각각 15호부터 20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제1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시장이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4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의 공장

별표 5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의 공장

별표 15 제12호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14호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22 제8호 중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별표 22 제14호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삭 제>
2.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

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삭 제>

할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0. (생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18호의 창고시설

12. ~ 15. (생략)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31조제2항제6호다목-----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12. ~ 15. (현행과 같음)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생략)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 21. (생략)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5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 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1. ~ 15. (현행과 같음)

16. -----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7. (현행과 같음)

18. -----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9. ~ 21. (현행과 같음)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

1. ~ 6. (현행과 같음)

제5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

-----.

제53조(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6항제1호-----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2. (생략)

②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 도시계획위원회의 -----

--.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

-----.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4조제8항-----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2. (생 략)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4조제9항-----

-----.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여,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

제5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구성) ①·② (생략)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1.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

②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시설

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6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

④ ~ ⑥ (생 략)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3개월-----

-. -----

-----.

※ 별표의 개정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지 않음.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개정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예산상 및 기금의 조치 등이 필요한 비용발생 사항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속초시 건설도시과장 이 맹 섭
연락처	(033) 639 - 2406



속 초 시



수신 건설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6A강원속초034)

1. 건설도시과-(2016. 4. 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①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

②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③ 저장 버튼 오른쪽의 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1566-3287 또는 02-3789-4450)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2016A강원속초034) 1부. 끝.

속 초 시 장

주무관

여성정책담당

여성가족과장

전결 2016. 4. 11.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8939

(2016. 4. 11.)

접수 건설도시과-7026

(2016. 4. 11.)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속초시청)

/ <http://sokcho.gangwon.kr>

전화번호 033-639-2610

팩스번호 033-639-2739

/ jsh8449@korea.kr

/ 대국민 공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검토의견

제(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제60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 ⑥ (생략)	제60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u> <u>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합 검토 의견> 참조



속 초 시



수신 건설도시과장

(경유)

제목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회신

1. 건설도시과-3631(2016.2.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속초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차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조서

기존규제	개선내용	검토결과
법령의 위임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상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의 사유 삭제	이 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조례로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 계획 안에 주민동의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서류 제출 부담 가중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이 행

끝.

경 제 진 흥 과 장

주무관

규제개혁담당

경제진흥과장

전결 2016. 3. 4.

협조자

시행 경제진흥과-9555

(2016. 3. 4.)

접수 건설도시과-3998

(2016. 3. 4.)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속초시청)

/ <http://sokcho.gangwon.kr>

전화번호 033-639-2033

팩스번호 033-639-2465

/ jina301@korea.kr

/ 비공개(6)

「속초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취락지구 지정목적 및 적용범위, 적용요건, 제외지역 등 기준을 마련함(안 제1조~6조)
- 자연취락지구 대한 대상호수, 밀도호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9조)
- 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의 경계, 지구의 정비기준, 건축허가, 지구정비 계획 등 세부 정비기준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 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 연락처 : 전화(033-639-2447), 팩스(033-639-2485), 이메일(gcgim@korea.kr)

속초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이란 지구면적 1만㎡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제4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 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4. 주변에 상당 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5.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마을의 집단적 이주가 필요한 지역(단, 이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속초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한다.

제6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이상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밀도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0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 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 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지구내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도시기반·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